

「중소기업기본법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5월 21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##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중소기업 ombudsman의 권한과 역할 및 이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견 제출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 현황의 점검, 조사 및 보호 조치 등의 업무를 중소기업 ombudsman의 업무로 추가하고,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정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 등 해당 업무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, 중소기업 ombudsman의 개선권고를 요청받은 업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,

중소기업 ombudsman은 업무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(漏泄)하지 못하게 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중소기업 ombudsman 제도 역할·기능 보완(안 제22조제1·2항)

- 1) 중기 ombudsman 업무에 규제애로 의견 제출자 보호와 적극행정 징계감경·면제의 건의 및 규제애로 관련 실태조사·평가 등 추가

### 나. 중기 ombudsman 업무처리 효율성 강화(안 제22조제6·7항)

- 1) 중기 ombudsman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업무기관의 장에 대한 의견 표명 근거를 신설하고 기관의 성실한 검토 및 회신 의무 부여
- 2) 의견표명 이외 중기 ombudsman의 규제애로 개선권고에 대하여, 해당 업무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를 따르도록 함

### 다. 중기 ombudsman의 책임성 강화(안 제22조제4·9·10항)

- 1) 중기 ombudsman의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, 공정한 업무수행 및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확히 법제화
- 2) 규제개혁위원회, 국무회의 및 국회에 대한 중기 ombudsman의 연간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·보고 기한을 1월말에서 2월 말일로 현실화

### 라. 의견 제출자 보호 및 징계면책 건의제 등 보완(안 제23 ~ 24조)

- 1) 규제애로 의견 제출자 보호제 대상을 행정기관에서 업무기관으로 확대하고 중기 ombudsman의 보호 현황 점검·조사 및 의견 제시권 부여
- 2) 중소기업 및 이해관계자 등이 중기 ombudsman에게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, 준용할 필요가 낮은 「행정절차법」 제44조를 삭제
- 3) 적극적인 중소기업 애로해소와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하여도 중기 ombudsman이 적극행정 징계감경·면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정비
- 4) 규제개선 평가결과 등이 우수한 기관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 마련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#### 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우)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,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 
중소벤처기업부 ombudsman지원단
- 전자우편 : [chowal@korea.kr](mailto:chowal@korea.kr)
- 팩스 : 044-204-7179

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ombudsman지원단(전화 044-204-7171, 팩스 044-204-717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 중 “기존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”을 “규제를 정비하고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제6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6호(중전의 제3호) 중 “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”을 “규제를 정비하고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1월말”을 “2월 말일”로 한다.

3.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불이익이나 차별 현황의 점검, 조사 및 의견 제출자 보호 조치
4. 제23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의 건의
5. 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및 평가와 그 결과의 공표

제22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,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항(중전의 제6항) 전단 중 “제2항”을 “제6항에 따른 의견 표명 외에도 제2항제1호 및 제2호”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“업무기관의 장은 권고”를 “개선 권고를 요청받은 업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고, 해당 권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(중전의 제7항) 중 “제6항”을 “제7항”으로 한다.

⑥ 중소기업 ombudsman은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업무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업무기관의 장은 그 의견을 성실히 검토하여 처리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중소기업 ombudsman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⑨ 중소기업 ombudsman은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받은 자료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(漏泄)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⑩ 중소기업 ombudsman은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고,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.

제23조제1항 전단 중 “제22조제2항”을 “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17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44조”를 “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17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행정기관”을 “업무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행정기관”을 “업무기관”으로, “경우에는”을 “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무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규제개선”을 “규제개선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”로, “담당공무원”을 “담당공무원 및 임직원”으로 한다.

제2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중소기업 ombudsman은 제22조제2항제5호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2조(중소기업 ombudsman의 설치) ①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<u>기존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</u>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ombudsman을 둔다.</p> <p>② 중소기업 ombudsman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3. 그 밖에 <u>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</u>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중소기업 ombudsman은 업무에</p>	<p>제22조(중소기업 ombudsman의 설치) ① ----- <u>규제를 정비하고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</u>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<u>불이익이나 차별 현황의 점검, 조사 및 의견 제출자 보호 조치</u></p> <p>4. 제23조제4항에 따른 <u>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의 건의</u></p> <p>5. <u>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및 평가와 그 결과의 공표</u></p> <p>6. ----- <u>규제를 정비하고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</u> 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</p>

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(생략)

<신설>

⑥ 중소기업 ombudsman은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업무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중소기업 ombudsman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

⑦ 중소기업 ombudsman은 제6항에 따른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

-----  
----- 2월 말일-----  
-----

⑤ (현행과 같음)

⑥ 중소기업 ombudsman은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업무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업무기관의 장은 그 의견을 성실히 검토하여 처리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중소기업 ombudsman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⑦ ----- 제6항에 따른 의견 표명 외에도 제2항제1호 및 제2호-----

----- . ----- 개선 권고를 요청받은 업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고, 해당 권고  
-----  
-----  
----- .

⑧ ----- 제7항

실태를 점검하고, 권고를 받은  
업무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 
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
그 내용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⑧·⑨ (생략)

제23조(의견 제출 등) ① 중소기업  
업자·이해관계자와 관련 단체  
의 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업  
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ombuds  
만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  
이 경우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  
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「행정  
규제기본법」 제17조 및 「행정  
절차법」 제44조를 준용한다.  
② 제1항의 의견 제출과 관계된  
행정기관은 규제 개선 등에 관  
한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⑨ 중소기업 ombuds만은 제2항  
에 따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받  
은 자료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  
을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 외로  
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  
(漏泄)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⑩ 중소기업 ombuds만은 업무를  
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고, 정  
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.

⑪·⑫ (현행 제8항 및 제9항과  
같음)

제23조(의견 제출 등) ① -----  
-----  
----- 제22조제2항제1호 및  
제2호-----  
-----  
----- 「행정  
규제기본법」 제17조-----  
-----.  
② -----  
업무기관-----  
-----

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중소기업 ombudsman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가 그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진정 등을 제기한 자를 대리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.

④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담당공무원 등을 징계하는 경우 중소기업 ombudsman은 해당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.

제24조(행정지원 등) ①·② (생략)

<신 설>

-----  
-----  
-----.

③ -----  
-----  
-----

--- 업무기관-----

-----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무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-----.

④ ----- 규제개선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-----  
----- 담당공무원 및 임직원 -----

-----  
-----  
-----.

제24조(행정지원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중소기업 ombudsman은 제22조 제2항제5호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